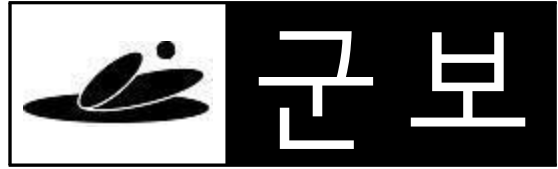


예 산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제703호 2023. 4. 20.(목)

입법예고

- 예산군 공고 제2023-721호 :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- 예산군 공고 제2023-722호 :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
입법예고
- 예산군 공고 제2023-723호 :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33
조례안 입법예고

고 시

- 예산군 공고 제2023-99호 : 예산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역사공원) 결정(변경) 고시에 따른 39
지형도면 고시

회									
람									

발행 예 산 군 (편집 기획실 ☎ 339-7142)

예산군 공고 제2023 - 721호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4월 19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

2. 제안이유

가.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농식품 대외적 인지도 제고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단서 삭제(안 제5조 제1항)

나. 단서 삭제(안 제6조 제1항)

다.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교육 이수 추가(안 제13조 제1항)

-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교육 이수를 통한 품질관리체계 구축

라.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

(안 제13조 제5항)

-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

마. 명칭 변경(안 제14조 제5항 1호)

- (변경 전) 연합사업조직, 통합마케팅조직 → (변경 후) 생산유통통합조직

바. 공동상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농특산물에 대한 보상비 지원 근거 조항

신설(안 제15조)

4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.5.9.(화)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 (☎ 041-339-7574, fax 041-339-7559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(입법예고)기간 : 2023. 4. 19.(수) ~ 2023. 5. 9.(화)

나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다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의견제출할 곳

- 우편발송 :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농정유통과
농촌산업유통팀 (우편번호 32435)

- 전자메일 : juil3405@korea.kr

- 기타 문의 관련 : ☎ (041)339-7574, FAX: (041)339-755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상품”을 “허가부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상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모니터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제5항제1호 중 “연합사업조직, 통합마케팅조직”을 “생산유통통합조직”으로 한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보상비 지원) ① 군수는 공동상표 농특산물 대외홍보를 통한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동상표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품을 제공한 경우
2.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할인하여 판매를 제

공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홍보를 위하여 제공한 농특산물에 대한 보상

2. 홍보용으로 농특산물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손실 차액에 대한 보상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제5조(사용허가 신청과 절차) ① <u>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</u> <u>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</u> <u>다. 다만, 농산물 공동선별 과정</u> <u>을 거쳐 공동출하하는 품목은</u> <u>예산군 연합사업단 심의위원회</u> <u>에서 심의 후 예산군 연합사업</u> <u>단장이 신청하여야 한다.<후단</u> <u>신설 2016.5.20.></u> ② (생 략)	제5조(사용허가 신청과 절차) ① ----- ----- <u>-.<단서 삭제></u>		
	제6조(사용허가) ① 군수는 제5 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서가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의 서 류검토와 현지 확인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공동상표 사 용을 허가한다. <u>다만, 예산군 연</u> <u>합사업단장이 제출한 신청건은</u> <u>별도 심사 후 사용을 허가한다.</u> ②·③ (생 략)	제6조(사용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.<단서 삭제></u>		
	제13조(사후관리) ① 공동상표 사 용권자는 <u>상품의 품질과 유통에</u> <u>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</u>	제13조(사후관리) ① ----- ----- <u>허가부서 또는 전문기</u> <u>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</u>		

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14조(홍보 및 육성지원) ① ~ ⑤ (생략)

1. 연합사업조직, 통합마케팅조직, 품목광역조직 등 군단위 조직 육성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

2. (생략)

⑥ (생략)

<신설>

여 상품-----
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허가 품목을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모니터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홍보 및 육성지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1. 생산유통통합조직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보상비 지원) ① 군수는 공동상표 농특산물 대외홍보를 통한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공동상표의 대내외적 홍보를

위하여 농특산품을 제공한 경우

2.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할인하여 판매를 제공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홍보를 위하여 제공한 농특산물에 대한 보상

2. 홍보용으로 농특산물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손실 차액에 대한 보상

제15조 · 제16조 (생략)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 · 제17조 (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)

<삭제>

예산군 공고 제2023 - 722호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4월 19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

2. 제안이유

가.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농식품 대외적 인지도 제고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당연직 위원 변경(안 제2조 제1항 제1호)

- 기획실장 삭제

- (변경 전)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→ (변경 후)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

나. 심사기준 변경(안 제7조 제1항) 제3호 신설

다.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 변경(안 제8조 제3항)

-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는 문구 삭제

라. 사후관리 조항 신설(안 제13조)

마.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7조)

4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.5.9.(화)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 (☎ 041-339-7574, fax 041-339-7559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(입법예고)기간 : 2023. 4. 19.(수) ~ 2023. 5. 9.(화)

나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다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의견제출할 곳

- 우편발송 :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농정유통과
농촌산업유통팀 (우편번호 32435)
- 전자메일 : juil3405@korea.kr
- 기타 문의 관련 : ☎ (041)339-7574, FAX: (041)339-755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 성	반 대		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실장, 교육체육과장”을 “교육체육과장”으로, “기술보급과장”을 “농촌자원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위촉직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심의위원회 운영)”을 “(심의위원회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실시 한다”를 “실시한다”로 한다.

2. 정부나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
3.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: 별지 제3호서식

제8조제3항 중 “이상 이어야 하고 심사항목 중 4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여야”를 “이상이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실시토록하고”를 “실시토록 하고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사후관리) ① 공동상표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 부 서 류	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.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. <u>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</u>
------------------	---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으로 하고,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“품목”을 “제품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예산군 공고 제2023 - 722호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4월 18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

2. 제안이유

가.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농식품 대외적 인지도 제고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당연직 위원 변경(안 제2조 제1항 제1호)

- 기획실장 삭제

- (변경 전)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→ (변경 후)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

나. 심사기준 변경(안 제7조 제1항) 제3호 신설

다.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 변경(안 제8조 제3항)

-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는 문구 삭제

라. 사후관리 조항 신설(안 제13조)

마.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7조)

4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.5.9.(화)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 (☎ 041-339-7574, fax 041-339-7559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(입법예고)기간 : 2023. 4. 19.(수) ~ 2023. 5. 9.(화)

나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다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의견제출할 곳

- 우편발송 :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농정유통과
농촌산업유통팀 (우편번호 32435)
- 전자메일 : juil3405@korea.kr
- 기타 문의 관련 : ☎ (041)339-7574, FAX: (041)339-755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 성	반 대		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실장, 교육체육과장”을 “교육체육과장”으로, “기술보급과장”을 “농촌자원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위촉직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심의위원회 운영)”을 “(심의위원회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실시 한다”를 “실시한다”로 한다.

2. 정부나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
3.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: 별지 제3호서식

제8조제3항 중 “이상 이어야 하고 심사항목 중 4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여야”를 “이상이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실시토록하고”를 “실시토록 하고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사후관리) ① 공동상표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 부 서 류	1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.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. <u>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</u>
------------------	---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으로 하고,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“품목”을 “제품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2〕

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(제8조 관련)

- 정량평가는 행정에서 평가하고, 정성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.

《정량평가표》

항 목	배점	심 사 기 준	평점
1.경력(영농,영업)	10	○10년이상	
	8	○5년이상 10년미만	
	6	○2년이상 5년미만	
	4	○2년미만	
2.연간매출액 ※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	10	○연간매출액 3억이상	
	8	○연간매출액 2억이상	
	6	○연간매출액 1억이상	
	4	○연간매출액 5천만원이하	
3.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확보	10	○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(저온시설, 건조시설, 가공시설, 선별시설, 포장시설, 수송차량 등) 9종이상 확보	
	8	○위 시설 및 기자재 7종이상 확보	
	6	○위 시설 및 기자재 5종이상 확보	
	4	○위 시설 및 기자재 3종이하 확보	
4.유통관리 ※자체상표: 특허청 상표등록기준	10	○3년이상 자체상표를 사용하고 최근3년내 행정처분 없음	
	8	○자체상표가 없고 최근3년내 행정처분 없음	
	6	○1년이상 자체상표를 사용하고 최근3년내 행정처분 1회이하	
	4	○자체상표가 없고 최근3년내 행정처분 1회이하	
5. 우수조직 (사업자)인센티브	10	○수출, 품질우수표창, 품평회 등 입상, 품질인증, KS규격인증, ISO인증,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	
합 계			점

《정성평가표》

항 목	배점	심 사 기 준	평점
1.산지(제품)유명도 및 성가도	10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매우 높고 재배(생산)방법 등이 차별화 되어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	
	8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높은 수준이며 재배(생산)방법 등이 차별화 되어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	
	6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	
	4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성가제고가 보통	
2.유통판로확보	10	○다양하고 일정한 판매처 확보	
	8	○판매처 일부 확보	
	6	○일정한 판매처가 없으나 향후 판로확보 가능성이 높음	
	4	○일정한 판매처가 없으나 향후 판로확보 가능성이 보통	
3.생산포장(영업장) 입지	10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집단화 지역	
	8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분산화 지역	
	6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집단화 지역	
	4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분산화 지역	
4.생산기술수준	10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매우우수	
	8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우수	
	6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양호	
	4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보통	
5.품질관리수준	10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매우우수	
	8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우수	
	6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양호	
	4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보통	
합 계			점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허가(연장) 신청서

신청인	단체명			조직원수	
	대표자			사업자 등록번호	
	주소	☎			
생산 판매 계획	상품명			품목	
	포장단위			경영규모	
	생산기간			출하기간	
	생산계획량			상표사용 출하계획량	
	주사업장 소재지				
	상품특성				
사용원료 (가공품에 한함)	상품명	주원료	배합비율	주원료 생산지	
<p>「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」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자 (서명 또는 인)</p> <p>예산군수 귀하</p>					
첨부 서류	<p>1.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</p> <p>2.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</p> <p>3.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</p>				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생산·출하 여건 개요서

신청단체명		대표자	(참여농가수 호)
품 목		연간출하 계 획 량	
1.일반여건	운영경력	년 월 일 구성 (경력 년)	
	대외신용		
	생산(출하)량	생산계획:	톤, 출하계획 : 톤
	공동상표 사용출하량	톤	
	판매처확보		
2.생산여건	생산입지조건		
	생산기술수준		
	생산시설현황		
	보유기계장비		
3.품질관리	선별방식	농협공동선별(), 자체공동선별()	
	자체품질관리		
	교육훈련현황		
	집하선별시설		
	선별기계장비		
	저온·예냉시설		
	포장재규격수량 리콜제 방법		
4.특기사항			
※ 기재방법 ○ 일반여건 : 운영경력,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, 생산 및 출하 물량, 판매처 확보 등 ○ 생산여건 : 경지상태, 비옥도, 자연재해, 수질, 수원, 주위 환경등 생산 포장, 입지조건, 생산기술수준,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 ○ 품질관리 : 자체품질관리 열의도, 교육훈련 참여,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, 반품 및 교환방법 등 ○ 특기사항 :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			

[별지 제3호서식]

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

단체명		대표자	(참여농가수 호)
품 목 (품종)		출 하 계획량	

1.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, 공동상표 품목별 품질관리(상품출하)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생산·출하·유통하며, 출하 제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.

2.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,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단 체 명 :

성 명 : ①

예 산 군 수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

- 허가번호 :
- 사 용 자 :
- 주 소 :
- 품 목 명 :
- 허가조건 :

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
위와 같이 상표사용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예 산 군 수

〔별지 제5호서식〕

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

허가번호	허가일자	생산자(사용자)		제품명	허가기간	비고
		성 명	주 소			

[별지 제6호서식]

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보고서

사 용 자		출 하 내 역				비 고
단체명	주 소	품 목 명	출하량 (톤)	포장재 (매수)	판매액 (천원)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 예산군수 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예산군 농 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한다.	제2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당연직 위원 : 기획실장, 교육체육 과장, 농정유통과장, 축산과장, 산림 녹지과장,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과장	1. ----- <u>교육체육과장</u> ----- ----- ----- <u>농촌자원과</u> 장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 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<u>위원</u> ----- ----- -----
제3조(심의위원회 운영) ①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심의위원회 운영 등) ① ----- ----- -----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</u>	3. <u>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</u>

<p><u>로</u> <u>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</u> <u>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	<p><u>로</u> <u>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</u> <u>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
<p>4. (생략)</p>	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용허가 신청과 절차)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사용허가 신청과 절차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2. 정부나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</u> <u>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</u> <u>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</u></p>	<p><u>2. 정부나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</u> <u>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</u> <u>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</u></p>
<p><<u>신 설</u>></p>	<p><u>3.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: 별지</u> <u>제3호서식</u></p>
<p>② 사용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<u>실</u> <u>시</u>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<u>실시한다.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심사기준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8조(심사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기준은</p>	<p>③ -----</p>

<p>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 이어야 하고 심사항목 중 4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 <u>이상이어야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심사절차) ①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<u>실시토록하고</u>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심사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시토록 하고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(사후관리) ① 허가부서는 <u>공동상표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.</u> ② <u>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【별표 2】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(제8조 관련)</p>	<p>【별표 2】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(제8조 관련)</p>
<p>○(생략) ○ 전체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한다. 《정량평가표》</p>	<p>○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《정량평가표》</p>

(별표 2)

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(제8조 관련)

- 정량평가는 행정에서 평가하고, 정성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.
- 전체 심사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한다.

《정량평가표》

항 목	배점	심 사 기 준	평점
1.경력(영농,영업)	10	○5년이상	
	8	○3년이상 5년미만	
	6	○1년이상 3년미만	
	4	○1년미만	
2.연간 매출액 ※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	10	○연간매출액 2억 원이상	
	8	○연간매출액 1억 원이상	
	6	○연간매출액 5천만원이상	
	4	○연간매출액 5천만원미만	
3.생산포장(영업장) 일치	10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집단화 지역	
	8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분산화 지역	
	6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집단화 지역	
4.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확보	10	○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(저온시설, 건조시설, 가공시설, 선별시설, 포장시설, 수송가방 등) 5종이상 확보	
	8	○위 시설 및 기자재 4종이상 확보	
	6	○위 시설 및 기자재 3종이상 확보	
	4	○위 시설 및 기자재 3종미만 확보	
5.유통관리 표기사항표:백회징 상표등록기준	10	○3년이상 자체상표를 사용하고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 없음	
	8	○1년이상 자체상표를 사용하고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 1회미만	
	6	○자체상표가 없고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 없음	
	4	○자체상표가 없고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 1회미만	
합 계			점

(별표 2)

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(제8조 관련)

- 정량평가는 행정에서 평가하고, 정성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.

《정량평가표》

항 목	배점	심 사 기 준	평점
1.경력(영농,영업)	10	○10년이상	
	8	○5년이상 10년미만	
	6	○2년이상 5년미만	
	4	○2년미만	
2.연간 매출액 ※사업자 총 매출액 기준	10	○연간매출액 3억 원이상	
	8	○연간매출액 2억 원이상	
	6	○연간매출액 1억 원이상	
	4	○연간매출액 5천만원이하	
3.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확보	10	○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(저온시설, 건조시설, 가공시설, 선별시설, 포장시설, 수송가방 등) 8종이상 확보	
	8	○위 시설 및 기자재 7종이상 확보	
	6	○위 시설 및 기자재 5종이상 확보	
	4	○위 시설 및 기자재 3종이하 확보	
4.유통관리 ※자체상표: 특허청 상표등록기준	10	○3년이상 자체상표를 사용하고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 없음	
	8	○자체상표가 없고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 없음	
	6	○1년이상 자체상표를 사용하고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 1회이하	
	4	○자체상표가 없고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 1회이하	
5.우수조직 (사업자)인력비	10	○수출, 품질우수표장, 품질회 등 일성, 품질인증, KS규격인증, ISO인증,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인증자료 제출시 매년당 2점 부여	
합 계			점

《정성평가표》

항 목	배점	심 사 기 준	평점
1.산지(제품)유명도 및 성가도	10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매우 높고 판매(생산)방법 등이 화려했던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	
	8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높은 수준이며 판매(생산)방법 등이 화려했던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	
	6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성가도가 기대	
	4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성가도가 보통	
2.유통관리확보	10	○다양하고 일정한 판매처 확보	
	8	○판매처 일부 확보	
	6	○일정한 판매처가 없으나 향후 확보 가능성 높음	
3.생산포장(영업장) 일치	10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집단화 지역	
	8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분산화 지역	
	6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집단화 지역	
	4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분산화 지역	
4.생산기술수준	10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매우우수	
	8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우수	
	6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양호	
	4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보통	
5.품질관리수준	10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매우우수	
	8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우수	
	6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양호	
	4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보통	
합 계			점

《정성평가표》

항 목	배점	심 사 기 준	평점
1.산지(제품)유명도 및 성가도	10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매우 높고 판매(생산)방법 등이 화려했던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	
	8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높은 수준이며 판매(생산)방법 등이 화려했던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	
	6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성가도가 기대	
	4	○산지(제품)유명도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성가도가 보통	
2.유통관리확보	10	○다양하고 일정한 판매처 확보	
	8	○판매처 일부 확보	
	6	○일정한 판매처가 없으나 향후 확보 가능성 높음	
3.생산포장(영업장) 일치	10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집단화 지역	
	8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없고 분산화 지역	
	6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집단화 지역	
	4	○주변환경 오염원이 일부 있고 분산화 지역	
4.생산기술수준	10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매우우수	
	8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우수	
	6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양호	
	4	○신청품목에 대한 지식, 기술수준이 보통	
5.품질관리수준	10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매우우수	
	8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우수	
	6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양호	
	4	○수확(가공), 포장, 출하 및 사후관리가 보통	
합 계			점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첨 부 서 류	1.~2.(생 략)
---------	------------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첨 부 서 류	1.~2.(현행과 같음) 3.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1부.
---------	--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생산·출하 여건 개요서

신청단체명	대표자	(참여농가수 호)
종 목	연간출하 계획량	
1.일반여건		
2.생산여건		
3.품질관리		
4.특기사항		
<p>* 기재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여건 : 생산자 자질, 조직, 운영경력,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, 생산 및 출하 물량, 판매처 확보 등 ○ 생산여건 : 경지상태, 비옥도, 자연재해, 수질, 수원, 주위 환경등 생산 포장, 입지조건, 생산기술수준,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 ○ 품질관리 : 자체품질관리 열의도, 교육훈련 참여,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, 반종 및 교관방법 등 ○ 특기사항 :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		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생산·출하 여건 개요서

신청단체명	대표자	(참여농가수 호)
종 목	연간출하 계획량	
1.일반여건	운영경력	년 월 일 구성 (경력 년)
	대외신용	
	생산(출하)량	생산계획: 돈, 출하계획: 돈
	공동상표 사용출하량	돈
2.생산여건	판매처 확보	
	생산입지조건	
	생산기술수준	
	생산시설현황	
3.품질관리	보유기جه장비	
	선별방식	동협공동선별(), 자체공동선별()
	자체품질관리	
	교육훈련현황	
	집하선별시설	
	선별기جه장비	
	겨온 여늘시설	
포장재규격수량		
4.특기사항	리콜저 방법	
	<p>* 기재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여건 :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, 생산 및 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○ 생산여건 : 경지상태, 비옥도, 자연재해, 수질, 수원, 주위 환경등 생산 포장, 입지조건, 생산기술수준,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 ○ 품질관리 : 자체품질관리 열의도, 교육훈련 참여,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, 반종 및 교관방법 등 ○ 특기사항 :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 	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

허가번호	허가일자	생산자(사용자)		종 목	허가기간	비고
		성 명	주 소			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

허가번호	허가일자	생산자(사용자)		제품명	허가기간	비고
		성 명	주 소			

예산군 공고 제2023 - 723호

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4월 19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
2. 제안이유

가.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관리조례 변경(안 제6조)

- (개정 전)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

→ (개정 후)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

나. 사무편람 조항 삭제(안 제9조)

다. 단서 조항 신설(안 제23조제1항)

라.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, 안 제 10조)

4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.5.9.(화)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 (☎ 041-339-7574, fax 041-339-7559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(입법예고)기간 : 2023. 4. 19.(수) ~ 2023. 5. 9.(화)

나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다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의견제출할 곳

- 우편발송 :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농정유통과
농촌산업유통팀 (우편번호 32435)
- 전자메일 : juil3405@korea.kr
- 기타 문의 관련 : ☎ (041)339-7574, FAX: (041)339-755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 성	반 대		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와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”를 “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와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”를 “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”로, “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”를 “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운영주체는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의2”를 “운영주체는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의2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를 “다만,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를 다시 재임대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예산군 고시 제2023-99호

예산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역사공원) 결정(변경)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

예산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역사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 2023-189호로 고시된 내용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20일

예 산 군 수

1. 예산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역사공원)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(충고 제2023-189호)
2. 예산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역사공원)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(1/5,000) : 게재생략
3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 가능
4.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(041-635-4619)와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(041-339-7704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예산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1] 군계획시설(역사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○ 역사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추사 서예	역사공원	신암면 용궁리 347-6번지 일원	-	71,013	71,013	-	

○ 역사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추사서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역사공원 신설 면적= 71,013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산군의 역사 및 유교문화관광자원을 배경으로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서예문화 중심지 및 활성화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공원 신설 결정